
고려 전기 軍功者 포상의 절차와 내용

李美智

(국사편찬위원회)

머리말

I. 군공 포상의 결정 과정

II. 군공 포상의 실제

1. 시행 과정

2. 포상 내용

맺음말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A2A01014841).

● 투고일: 2015. 8. 7. ● 심사일: 2015. 8. 21. ● 게재확정일: 2015. 9. 18.

www.kci.go.kr

요약

본고는 고려 시기 군공자에 대한 포상 사례를 통해 군공 포상의 결정 과정 및 시행 상의 특이점, 포상 시 지급된 부상의 종류와 특징 등을 정리해 보았다.

군공 포상은 초기에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건의 등 필요에 따라 시행되다가 현종대 거란과의 전쟁 후 포상 경험이 관례화되며 점차 제도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 이에 따라 군공 포상 업무를 특정 기구에서 주관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병부에서 공적을 정리하고 포상 내용까지 발의하다가 점차 양계 병마사가 담당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병마사는 군공 포상자 선정, 공적 검토 및 심사와 같은 실무 절차를 주관하였으며, 이를 도병마사에서 총괄 검토하여 상주하면 국왕의 최종 결재로 군공 포상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정된 군공 포상이 실제 시행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렸는지 명확하게 정리하기는 어려웠다. 경우에 따라 논의에서 시행까지 18일 만에 완료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길게는 功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발생한 지 2~3년 뒤에 포상이 집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군공 포상은 주로 국왕의 앞에서 시행되었다고 생각되며 예외적으로 피포상자의 자택에서 시행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 국왕이 주재하는 곳에서의 군공자 포상은 포상 대상에게 특별한 영예로 여겨졌을 것이며, 이에 따라 포상 주체인 국왕에 대한 충성을 한층 강화하는 의례적 효과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군공자 선별 기준 및 포상 방식은 늦어도 문종대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정리해 보았다.

군공 포상 시 주어진 부상은 크게 현물과 관함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려 전기 軍功者 포상의 절차와 내용

현물은 곡식·토지·직물·금은기 등이 지급되었다. 관함의 지급 역시 매우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일정한 규칙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주제어 : 고려, 보훈제도, 군공, 포상, 보상

머리말

918년 태조 왕건의 즉위와 함께 개창된 고려 왕조의 특징적인 면모 중 하나는 다양한 이민족과의 활발한 교류이다. 약 480여 년 동안 고려는 거란·여진·몽고·한족 등 다양한 민족이 세운 왕조와 외교 관계를 맺고 교류하였으며, 이 중 거란·여진·몽고 등과는 수차례, 혹은 수 십 년에 걸친 전쟁을 경험하기도 했다.

고려시기 동안에는 외세에 의한 전란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적지 않은 변란이 있었다. 가장 먼저 태조의 후삼국 통일 전쟁이 있었고, 강조의 정변·이자겸의 난과 같이 국왕의 자리를 둘러싼 정치적 변란도 있었다. 묘청의 난을 위시한 서경 천도 운동, 무신 정변과 같은 지배 세력 내의 분란도 있었으며 무신 집권기에는 지배 세력 내부에서 뿐 아니라 농민·천민들의 저항이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기도 했다.

고려 왕조는 이와 같은 전란과 변란이 수습되면 반드시 공을 따져 상을 베풀었다. 行賞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여, 특출한 공을 세운 장수들 뿐 아니라 이름 없이 사망한 병졸들에게도 일정한 복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본고는 이처럼 군사 작전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이들에 대한 행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고려 전기(태조~의종대) 軍功者에 대해 시행된 포상 제도의 구체적 면모는 어떠한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왕조의 포상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면 군공자 보다는 有功者라는 주제가 더 포괄적일 수도 있으나, 고려 왕조는 전근대 왕조의 특성 상 포상의 근거가 되는 공로의 기준이 상대적으로 넓었기 때문에 단순 隨從이나 力役 종사, 국왕과의 私的 관계 등도 유공(자)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고려의 보훈 정책을 탐구해 보고자 하는 본고에서는 검토 대상을 軍功

(者)에 대한 포상으로 한정하기로 한다.

사례 상 고려 전기의 군사 활동과 관련된 공로는 武功, 戰功, 邊功 등으로도 표현되며 단순히 功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따라서 軍功의 의미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고에서는 전투, 전쟁, 반란 진압, 국왕 신변 보호 등과 같은 군사 작전에 참여하여 세운 공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또한 군공자는 將卒로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 중에 공로를 세운 것으로 인정받은 자를 의미하며, 여기에 병사는 아니지만 군사적 활동에 동원·자원 등의 형태로 참여하여 공로를 세운 것으로 인정받은 자도 포함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전쟁 중에 몰번 된 고려인 및 신무기를 개발한 자 등의 경우, 군인이나 무반 관료가 아니라도 그 업적이 군사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군공 사례로 분석한다. 관성이나 개경의 방어용 성벽 축조에 참여한 인물, 역모를 고변한 병사, 동번 초유에 공을 세운 흑수역어 등도 전투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나 군사적 소요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여 군공 사례에 포함한다. 국왕의 서경 행차, 사원 행행 등 일반 관료들의 단순 호종에 대한 물품 지급은 恩賜로 이해하여 군공 포상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고려 전기 거란과의 종전 협상 중에 공로를 세운 것으로 인정되어 여러 차례 포상의 대상이 되었던 사신이나 문관들의 경우, 전쟁 중에 공로를 세운 것은 분명하나 군사적 활동이 아니라 외교적 활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접적인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고려 전기 군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기수행된 연구는 안타깝게도 그다지 많지 않은데, 그 대부분이 功臣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태조대의 三韓 功臣 혹은 건국 공신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그들이 지급받은 공신 전이나 공신 자손 음서 혜택과 관련된 연구들이 토지제도사·경제사·정치제도사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¹⁾

최근에는 외적과의 전쟁에서 활약한 전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룬 연

구2) 및 거란과의 2차 전쟁의 처리 과정에 나타나는 유공자 포상 내역에 대한 논고3)가 발표되었고, 예종대 恩賜라는 왕의 포상 행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검토한 연구4)도 제출되는 등 개인이 세운 공로와 그에 대한 왕조의 포상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그 분석 대상이 일반적인 戰功이 아니라 對外 전쟁 사례로 제한되어 있는 점, 특정한 사건 혹은 시기만을 제한적으로 검토하였다는 점 등에서 고려 왕조의 군공에 대한 포상을 제도적으로 조망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하겠다.

본고는 이와 같은 연구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하여, 고려 전기 군사 작전에 참여하거나 동원된 인물 중 그 공로가 인정되어 포상된 경우를 軍功(者)로 분류하고 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고려 전기에 시행되었던

1) 태조대 공신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 金甲童, 1990, 「高麗初期의 功臣制」, 『羅末麗初의 豪族과 社會變動 研究』,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金光洙, 1973, 「高麗太祖의 三韓功臣」, 『史學志』 7, 단국대 사학회; 金泳斗, 1996, 「高麗太祖代의 役分田」, 『高麗太祖의 國家經營』, 서울대학교출판부; 金炫廷, 1996, 「高麗開國功臣의 政治的 性格」, 『高麗太祖의 國家經營』, 서울대학교출판부; 朴天植, 1988, 「三韓壁上功臣 I 一壁上功臣의 形成과 太祖政權의 一端面—」, 『全羅文化論叢』 2; 朴天植, 1989, 「高麗配享功臣의 制度的 性格과 그 特性」, 『全羅文化論叢』 3; 吳致勳, 2012, 「高麗太祖代 祿邑의 歷史的 性格」, 『韓國史研究』 156, 韓國史研究會; 李基白, 1990, 「太祖王建과 그의 豪族聯合政治」, 『高麗貴族社會의 形成』, 一潮閣; 李鎮漢, 1987, 「高麗太祖代의 土地分給에 관한 연구」, 高麗大學校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洪承基, 1996, 「高麗初期의 祿邑과 勳田」, 『高麗太祖의 國家經營』, 서울대학교출판부; 김보광, 2012, 「고려 태조의 政治觀과 國政 운영」, 『한국인물사연구』 17
- 2) 박우현, 2012, 「高麗時代 戰功者 禮遇 研究」, 한국고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우현은 “戰功者”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전쟁의 범위를 대외 전쟁으로 한정하였다.
- 3) 李美智, 2012, 「고려시기 對거란 2차 전쟁 유공자와 그들에 대한 추가 포상」, 『韓國史研究』 157
- 4) 김신혜, 2015, 「고려 예종대 ‘恩賜’ 정책의 유형과 정치적 성격」, 『韓國史學報』 58
이와 관련하여, 唐代 제정 지출 행위를 법령이나 관례에 의한 공식적인 지출과 황제의 개별 명령에 의한 사적 지출로 구분하여 이해한 논저도 있다.
清水場東, 1997, 『帝賜の構造』, 中國書店

군공자에 대한 포상과 배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군공 포상의 결정 과정과 시행 사례 상 나타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고려 전기 군공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 군공 포상의 결정 과정

고려 전기의 포상 방식은 대체로 두 가지 방식으로 분류된다. 먼저, 공로의 과등을 나누고 과등에 따라 포상자 명단을 제시한 뒤 포상하는 경우가 있다. 태조의 건국 혹은 정종대 동북면 지역의 축성, 예종대 여진 정벌, 인종대 서경천도세력의 진압 사례처럼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이룩해 낸 공로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포상이 진행되었다. 이 경우에 공로로 인정받은 업적은 국왕 보좌, 機略, 축성 등 다양한 성격이 포함되며, 따라서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軍功은 사안에 따라 포상의 일부에만 해당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확인되는 포상 방식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개별적인 전투나 정변 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로자를 각각 포상하는 경우이다.

위와 같은 포상 사례는 대부분 최종 결재 단계인 制·敎·宣旨의 형태로 전하거나, “○○를 △△로 삼았다[以○○爲△△]” 혹은 “유사에게 명하여 (○○에게) □□를 내렸다[命有司 賜(○○)□□]”처럼 포상의 최종 시행 단계만 간략히 기록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制를 비롯한 왕의 명령은 포상에 대한 발의·功績 검토·심사 등 필요한 제반 단계를 거친 뒤 시행만을 앞둔 최종 결재 단계라고 생각되는데, 이 최종 결재 단계에 이르기 바로 전 단계로 추정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都兵馬使의 上奏이다.

- 가-1. 현종 10년(1019) (7월)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이번 거란 방어 시 戰陣 유공자 9천4백7십2인 각각에게 階職을 더하십시오.”라고 하니 따랐다.5)
- 가-2. 정종 8년(1042) (6월) 병술.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동로 열산현 영과수의 대정 홍간이 적과 싸우다가 적의 수가 많아 감당하지 못하고 살을 다 쏘자 힘이 다하여 죽었으니 청컨대 職賞을 내리십시오.”라고 하니 따랐다.6)
- 가-3. 문종 15년(1061) 9월 정묘.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적의 우두머리 아라불 등이 범경하여 변민을 겁락하였는데 평로진 병마녹사 강영과 서북면 병마녹사 고경인이 병사를 거느리고 항마진까지 쫓아가 패배시키고 수십급을 빼앗으며 병장기를 많이 얻었으니 포상을 보이시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니 따랐다.7)
- 가-4. 선종 8년(1091) (6월) 갑진.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지난해(1090년 7월) 번적이 창주를 도적질하였는데 병마녹사 안선준 등이 병졸을 거느리고 덕녕수에 나아가 둔을 치고 낭장 고맹 등을 보내어 찾아내어 치게하니 적이 크게 흩어졌습니다. 교위 승검과 대정 변학 등이 적중에 돌입하여 사졸의 사기를 복돋웠으니 바라컨대 職賞을 더하여 장래를 권면하십시오.”라고 하니 제를 내려 허락하였다.8)

주지하다시피 도병마사는 고려시대에 군사 및 대외 문제를 논하던 회의기관으로,9) 변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소요와 그에 대한 총괄적

5) 『高麗史節要』卷3 顯宗 10年(1019) (7月) 都兵馬使奏 今禦契丹 戰陣有功者九千四百七十二人 各增階職 從之

6) 『高麗史』卷6 靖宗 8年(1042) (6월) 丙戌 都兵馬使奏 東路烈山縣寧波戍隊正簡弘 與賊鬪 衆寡不敵 矢盡力窮而死 請追加職賞 從之

7) 『高麗史』卷8 文宗 15年(1061) 9月 丁卯 都兵馬使奏 賊酋阿羅弗等 犯境 劫掠邊民 平虜鎮兵馬錄事康瑩 西北面兵馬錄事高慶仁 率兵追及降魔鎮 敗之 斬獲數十級 多收兵仗 合示褒賞 從之

8) 『高麗史』卷10 宣宗 8年(1091) (6월) 甲辰 都兵馬使奏 往年 蕃賊寇昌州 兵馬錄事安先俊等 領卒出屯德寧戍 遣郎將高猛等 追捕奮擊 賊大潰 校尉崇儉·隊正邊鶴等 突入賊中 士卒增氣 俘斬有功 乞加職賞 以勸將來 制可

인 처리를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軍功者에 대한 포상도 논의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위 사료에서 보이는 것처럼 도병마사에서 포상 대상자와 그 사유, 포상 내용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정리하여 상주하면 이에 대해 국왕이 재가하면서 군공자에 대한 포상이 실시되었다.

그런데 도병마사는 기본적으로 회의 기구였으며 그 구성원 역시 재추에 해당하므로, 포상자 선정 및 포상 자격에 대한 심사 등과 같은 군공 포상의 세부 단계를 직접 체결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포상 결정의 실무는 도병마사에서 논의되기 이전 단계에서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공 포상 논의 절차에 대한 단서를 다음 사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 문종 4년(1050) 정월 기축 초하루. **동북면 도병마사** 박성걸이 아뢰기를, “지난 해(1049) 10월 해적이 진명(도부서)의 병선 2척을 빼앗아 갔는데 병마녹사 문양렬이 즉시 병선을 거느리고 원흥도부서 판관 송제한과 추격하여 적의 소굴에 이르러 마을을 불태우고 20급을 베고 돌아 왔으니 그 공이 상을 줄 만 합니다.”라고 하니 제하여 **(사안을) 도병마사로 보냈다.**¹⁰⁾

동북면에서 있었던 외적과의 전투 결과를 해당 지역 병마사가 보고하면서 포상을 건의하자, 국왕은 이를 도병마사에서 논의하게 하였다. 군공의 발생 경과와 공적 확인을 포함한 유공자 명단 작성 등 포상의 근거가

9) 末松保和, 1956, 「高麗兵馬使考」, 『東洋學報』 39-1; 1965, 『靑丘史草』 1, 笠井出版社 邊太燮, 1969, 「高麗都堂考」, 『歷史教育』 11·12 합집; 1971,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金甲童, 1994, 「高麗時代의 都兵馬使」, 『歷史學報』 141

10) 『高麗史』 卷7 文宗 4年(1050) 春正月 己丑 朔 東北面都兵馬使朴成傑奏 上年十月 海賊奪鎮溟兵船二艘而去 兵馬錄事文揚烈 卽率兵船 與元興都部署判官宋齊罕 追至賊穴 焚蕩廬舍 斬馘二十級而還其功可賞 制付都兵馬使

될 기초적 내용을 병마사에서 정리하여 보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 시행 검토는 도병마사가 담당하는 형태로 군공 포상 논의 절차가 구분되어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된다.

그런데 도병마사가 일찍부터 군공 포상의 총괄 검토 단계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별 군공의 포상 가능 여부에 대한 기본적 보고를 담당하는 실무 기관은 시기별로 변화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아래의 사료를 보자.

다-1. 현종 2년(1011) (정월) 신사. **(지)채문**이 아뢰어 말하기를, “태조께서 통합하던 때에는 공이 있는 자는 비록 (공이) 작더라도 반드시 상을 주었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위기를 겪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니 마땅히 먼저 상을 후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왕이 (이를) 따라 현안지 등 16인을 중윤으로 삼았다.¹¹⁾

다-2. 현종 2년(1011) (2월 정사). 감찰어사 **안홍점**이 상언하기를, “거란 병이 장단에 이르렀을 때 눈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감악신사에 깃발을 꽂은 병사와 말이 있는 듯하여 거란병이 두려워 감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 청컨대 담당 관사에 명하여 신사를 수리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니 따랐다.¹²⁾

라-1. 현종 7년(1016) (정월) 임술. **병부**에서 아뢰기를, “낭장 진명·유고가·강효 등 74인에게 청컨대 爵 一級 더하여 변공을 포상하십시오.”라고 하니 따랐다.¹³⁾

라-2. 현종 7년(1016) (2월) 경진. **병부**에서 아뢰기를, “중랑장 채평과 이

11) 『高麗史節要』 卷3 顯宗 2年(1011) (正月) 辛巳 蔡文奏曰 聖祖統合之時 有功者 雖小必賞 況今方涉險艱 要得衆心 宜先懋賞 王從之 授玄安之等十六人爲中尹

12) 『高麗史節要』 卷3 顯宗 2年(1015) (2月 丁巳) 監察御史安鴻漸 上言 丹兵 至長湍 風雪暴作 紺岳神祠 若有旌旗土馬 丹兵 懼不敢前 … 請令所司 修報祠 從之

13) 『高麗史』 卷4 顯宗 7年(1016) (정월) 壬戌 兵部奏 郎將秦明·柳高價·康孝等七十四人 請增爵一級 以賞邊功 從之

강 등 159인은 아울러 전공이 있으니 청컨대 爵 一級을 더하십시오.”라고 하니 따랐다.¹⁴⁾

라-3. 현종 8년(1107) (7월) 경자. **병부**에서 아뢰기를, “정보 이용봉과 정조 임슬광 등 30인은 모두 변공이 있으니 청컨대 鄉職 一級을 더하십시오.”라고 하니 따랐다.¹⁵⁾

라-4. 현종 9년(1018) (6월) 경신. **병부**에서 아뢰기를, “장군 양약과 중랑장 함진 등 449인은 모두 변공이 있으니 職 一級을 더하십시오.”라고 하니 따랐다.¹⁶⁾

마-1. 정종 9년(1043) (6월 정사). **동북로 병마사**가 아뢰기를, “연해 분도 관관 황보경이 홀로 전함을 이끌고 깊은 바다로 들어가 수적을 공격하여 사로잡은 인원이 매우 많으니 청컨대 포상을 행하십시오.”라고 하니 따랐다.¹⁷⁾

마-2. 문종 27년(1073) (5월) 정미. (**서북면 병마사**)가 또 아뢰기를, “... 문선 등 15인은 (여진인들의) 전쟁을 감독한 공이 있으니 청컨대 은상을 행하시어 권면하고 징계하는 뜻을 보이십시오.”라고 하였다. 문하시중 최유선 등 13인이 논의하여 아뢰기를, “... 청컨대 상을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¹⁸⁾

마-3. 예종 6년(1111) (12월) 을묘. 선덕진의 병졸 정진과 정주 사람 백과는 일찍이 죄를 얻어 도망하여 여진(의 지역으로) 들어가 더불어 꾀하여 변경을 노략질하였다. (정)진의 어머니가 원흥진에 있었는데

14) 『高麗史』卷4 顯宗 7年(1016) (2월) 庚辰 兵部奏 中郎將蔡宏·李康等一百五十九人 並有戰功 請增爵一級 從之

15) 『高麗史』卷4 顯宗 8年(1017) (7월) 庚子 兵部奏 正輔李龍奉·正朝任述光等三十人 皆有邊功 請加鄉職一級 從之

16) 『高麗史』卷4 顯宗 9年(1018) (6월) 庚申 兵部奏 將軍楊渥·中郎將咸進等 四百四十九人 皆有邊功 增職一級 從之

17) 『高麗史』卷6 靖宗 9年(1043) (6월) 丁巳 東北路兵馬使奏 沿海分道判官皇甫瓊 獨領戰艦 深入大洋 奮擊水賊 俘斬甚衆 請行褒賞 從之

18) 『高麗史』卷9 文宗 27年(1073) 五月 丁未 (西北面兵馬使) 又奏 ... 文選等十五人 監戰有功 請行恩賞以示勸懲 門下侍中崔惟善等十三人 議奏 ... 請勿行賞 從之

데 밤 2鼓에 (정)진과 (백)파가 여진인 골부와 함께 몰래 와서 그 어머니를 데리고 가려 하였다. **병마사**가 병졸을 보내어 잡아 죽이고 아울러 무기를 얻으니 爵賞을 차등있게 내렸다.¹⁹⁾

위의 자료들은 군공 포상 발의 주체가 확인되는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제시한 것이다. 포상 발의 주체가 개인 → 병부 → 병마사의 순으로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사료 다의 사례에서는 개인의 발의로 군공에 대한 포상이 실시되었다. 현종대에는 즉위 초부터 거란과의 전쟁이 이어졌으므로 군공 포상에 대한 수요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였을 것이다. 다만 아직 군공 포상과 관련한 전반적인 규정이 준비되지 않은 단계였다고 추정되는데, 아마도 이 때의 경험을 토대로 고려에서도 군공자 포상 제도가 점차 마련되기 시작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군공 포상과 관련하여 가장 현저하게 등장하는 기관은 병부와 양계 병마사이다. 현종대 군공 포상을 주로 담당했던 기관은 병부였다고 생각되는데, 사료 라에서 확인되듯이 병부는 군공자 명단과 그들의 공로, 그리고 포상 내용까지 정리하여 상주하고 있다. 그런데 정종 9년(1043)의 기사부터는 군공 포상을 논할 때 병부를 대신하여 양계 병마사가 등장하고 있다. 군공 포상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세부 절차에 대한 기록이 매우 소략하여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현종 전반기 이후의 군공 포상과 관련하여서 양계 병마사 혹은 도병마사의 상주가 주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현종대 이후 병부는 더 이상 군공 포상 발의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 쪽으로 포상 업무가 분장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²⁰⁾

19) 『高麗史』卷13 睿宗 6年(1111) (12月) 乙卯 宣德鎮卒鄭珍定州人白巴嘗得罪 亡入女眞 與謀寇邊 珍母在元興鎮 夜二鼓珍巴與女眞人骨夫 潛來將竊其母以去 兵馬使遣卒捕殺之 并獲器仗 賜爵賞有差

20) 이와 관련하여 정종대에 병부가 勳舊 가문의 자손의 免役에 대해 논하고 있는 기사도 있어, 여전히 병부가 군공 포상 관련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사도 있다.

양계 병마사는 정종 9년의 기록(마-1)을 시작으로 군공 포상 받기 주체로 등장하였다. 양계 병마사는 국경 지대의 수비를 담당하면서 해당 행정 구획의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함께 수행하였으므로²¹⁾ 관할 지역의 군사 작전의 경위와 성과를 조정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유공자의 공로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었을 것이며, 그에 대한 포상 건의도 이루어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종 6년의 기록(마-3)에 따르면 병마사가 병졸을 보내어 군공을 세웠고 이것에 대해 포상이 이루어졌는데, 기록 속에서 병마사가 군공 포상을 건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지만 병졸의 파견 주체가 병마사라는 점에서 병마사의 보고가 포상의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병마사의 군공 포상 발의가 모두 수용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이는 사료 마-2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때의 반대 주체는 문하시중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문하시중 역시 도병마사의 구성원이었으므로 병마사의 보고에 따른 군공 포상 여부의 최종 검토를 도병마사에서 담당하는 구조가 이 사례에서도 확인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정종대 이후 군공 포상 받기 기관으로 확인되는 병마사와 이전의 병부의 기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병부는 유공자 명단과 포상의 구체적 내용을 지정하여 상주하였던데 비해, 병마사는 전투의 경과와 군

『高麗史』卷6 靖宗 7年(1041) 九月 丁未 朔 尙書兵部奏 選軍別監選取文武班七品以上員子弟 除業文赴舉外 並充軍伍 此雖安不忘危之慮 然皆累世勳舊之子孫 故祖宗以來 不與于役 況在甲子丙子年間 已有禁制 非惟忘其先世之功 亦違舊制 請勿充隊伍 從之

그러나 위 기사 속 병부의 상주는 選軍이라는 병부 본연의 업무와 관련한 내용임으로, 병부가 군공 포상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21) 병마사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구 참조.

末松保和, 1956, 「高麗兵馬使考」, 『東洋學報』 39-1 : 1965, 『靑丘史草』 1; 金南奎, 1969, 「高麗 兩界兵馬使에 대하여」, 『李弘植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신구문화사; 1989, 『高麗兩界地方史研究』, 새문社; 邊太燮, 1971, 「高麗兩界의 支配組織」,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박용운, 2008, 「고려시기 兵馬使와 都兵馬使 機構에 대한 몇 가지 문제」, 『韓國史研究』 141

공자의 활약상을 보고하면서 포상에 대해서는 건의만 하고 어떤 부상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세부적인 포상 내용의 결정은 도병마사에서, 혹은 주어지는 副賞의 종류에 따라 유관 기관이 담당하였다고 추정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포상 업무 관련 기관으로 有司가 언급된 다음의 사례들이 참고 된다.

- 바-1. 문종 4년(1050) 11월 기유. 진명도부서 부사 김경응이 수군을 이끌고 해적 3척을 공격하여 열도에서 패배시키고 수십 급을 베어 바쳤으며 (해적 중에) 물에 빠져 죽은 자도 매우 많았으므로 유사에게 명하여 포상을 논의하도록 하였다.²²⁾
- 바-2. 문종 8년(1054) (12월). 유사가 청하기를, “태조공신 대광 천명 등 3천2백인에게 순서대로 직을 추증하십시오.”라고 하니 따랐다.²³⁾

위의 사례들은 포상 대상과 그들의 공적은 확정된 상태에서 포상의 내용을 결정하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병마사가 군공자의 명단과 그들의 공적을 확정하여 보고하면, 각각에 대한 포상 내용은 이렇듯 별도의 기구에서 초안을 작성하였다고 생각된다. 군공 포상에 수반하는 부상의 종류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듯이 매우 다양하므로, 부서가 특정되지 않고 관련 부서, 즉 유사라고만 지칭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문하성이 군공 포상 관련 기록에 등장하기도 한다.

- 사. 현종 9년(1018) (2월) 갑신. 문하성에서 아뢰기를, “용천교위 박명금이 그가 변공을 세워 받은 階職을 대신 그 아버지에게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 (그의 청대로) 따랐다.²⁴⁾

22) 『高麗史』卷7 文宗 4年(1050) 冬十一月 己酉 鎮溟都部署副使金敬應 率舟師 擊海賊 三艘于烈島 敗之 斬數十級以獻 沒溺者甚衆 命有司論賞

23) 『高麗史』卷7 文宗 8年(1054) (12月) 有司請 追贈太祖功臣大匡千明等三千二百人次第職 從之

위 기록은 변공을 세운 용천교위 박명금에게 내려진 階職의 처분에 대한 내용이다. 박명금이 군공을 세운 사실과 이로 인해 포상받은 것은 분명한데, 앞서 정리한 바와 달리 이를 병부나 병마사가 아닌 문하성에서 상주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그런데 문하성의 상주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박명금의 공로에 대한 포상 자체를 논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군공 포상에 따른 부상 수여 대상을 변경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박명금에게 내려진 부상은 관함의 수여였는데, 관함 수여와 그 수여 대상의 변경은 병마사의 관할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내용을 병마사가 상주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이를 문하성에서 관리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데, 문하성 소속 郎舍의 告身 署經 기능과 연관지어 이해하면 크게 어색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려 초에는 군공 포상에 대한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가 현종대에 전쟁을 겪으며 군공 포상이 시행되었고, 이 경험이 누적되면서 점차 관례화하였다고 생각된다. 초기에는 개인의 발의에 의해 포상이 시행되었고 이후에는 병부가 군공 포상 업무를 맡았다가 정종대 이후에는 병마사가 개별 공적에 대한 기본적 발의를 담당하고 포상 내용은 별도로 논의되는 방식으로 포상 결정 과정이 세분되었다고 생각된다. 국왕의 결재를 받기 전 총괄 검토는 역시 도병마사가 계속해서 담당하였다고 생각된다.²⁵⁾

24) 『高麗史』卷4 顯宗 9年(1018) (2月) 甲申 門下省奏 龍川校尉朴鳴金 願以所授邊功階職 代授其父 從之

25) 이와 달리 박우현은 考功司를 전공자 처리 업무를 총괄 및 주관하는 부서로 보았다. 군정을 총괄하는 군 책임자(병마사)·국방 및 군사 문제를 다루는 회의기구(도병마사·도평의사사)·군 업무를 담당하는 병부 등이 전공자에 대한 1차 고과를 담당하여 예우 내용을 제안하면 이에 대해 2차 고공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국왕의 승인을 얻어 인사권을 가진 이부와 병부 등에서 전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행하였다고 보았다(박우현, 앞의 글, 8~11쪽). 이러한 견해는 조규태도 『한국보훈제도발달사』(1997, 보훈연수원)에서 추론한 바 있는데, 고려 전기의 실제 군공 포상 사례와는 차이가

군공자 포상의 발의 주체로 도병마사만 확인되는 기사도 적지 않은데 이는 포상 실무 담당자(기관)의 의견을 도병마사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발의하였던 결과라 생각된다. 즉 병마사 등 실무 기관의 보고 중에 포함된 군공 포상 건의안을 도병마사가 그대로 국왕에게 상주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직전 결재자인 도병마사의 이름이 기록에 남기도 하고, 혹은 실무 단계의 기안자인 병마사·병부 등이 그대로 인용되고 도병마사는 생략되는 등의 다양한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계속해서, 포상의 집행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군공 포상의 실제

앞 장에서는 고려 전기 군공 포상의 대상과 포상이 결정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 장에서는 결정된 포상의 시행 과정과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 시행 과정

군공 포상 시행 과정은 소요 기간, 장소, 시행 상의 독특한 사례 등의 순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중국에서는 군공에 대한 포상은 그 시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되었다.²⁶⁾ 정치 제도 일반에서 唐을 모델로 삼아왔던 고려였으므로

있다고 생각된다.

26) 『通典』卷4 兵2 雜教令 大唐衛公李靖兵法 “諸有功合賞 不得踰時 有罪合罰 限三日

포상을 시행할 때에도 당의 모범을 따랐으리라 추정된다. 군공 포상의 시한과 관련한 규정이나 지침이 확인되지 않고, 포상 시행 기록들은 포상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나 그 발생 시기 등을 명확히 밝힌 사례가 많지 않아 군공 포상이 시행되는데 소요되는 시한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전역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뒤, 혹은 공로로 인정되는 행위가 발생한 후에는 해당하는 포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태조대에는 후백제군과의 교전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사이에 개별 전투의 군공자들에 대해 포상이 시행되었다.²⁷⁾ 태조대의 전쟁 기록에서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이후 전쟁 기사에서는 전투 수행 중 승전보와 같이 아군에 유리한 소식을 전하는 전령에게는 소식을 전한 자리에서 바로 포상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성종대 거란과의 1차 전쟁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포상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다. 현종초 거란과의 2차 전쟁이 진행 되던 중에는 태조대와 마찬가지로 전령 등에 대한 즉시적 포상을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군공 포상 기록이 없고, 개별 전투가 일단 마무리된 뒤에 포상이 시행되는 경향을 보인다.²⁸⁾

군공에 대한 포상 수요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현종대부터 예종대까지는 포상 원인 행위로부터 실제 시행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확인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데, 이를 정리해 보면 1개월에서 약 1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간혹 2~3년 후에 포상되는 경우도 있다.

內⁹(3821쪽) · 明賞罰 後漢 大將曹公(3884쪽)

27) 예를 들어 927년 公山 전투에 대한 기록은 전투 기록에 뒤이어 사망한 신승겸 등에 대한 포상이 함께 언급되어 있다(『高麗史節要』 卷1 太祖 10年 9月 · 『高麗史』 卷92 列傳5 洪儒 附 申崇謙). 고려와 견훤의 대결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전투 자체는 고려군의 패배로 일단락된 뒤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28) 거란과의 2차 전쟁에서 발생한 군공자 포상에 대해서는 李美智, 2012, 앞의 논문 참조.

인종대 들어서는 여러 차례 정변이 있었다. 그 중 인종 4년(1126) 이자겸 세력을 제거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 기록은 포상의 시행 소요 기간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서를 제공한다. 기록에 따르면 5월 정해일에 論賞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6월 을사일에 포상을 시행하였다.²⁹⁾ 이자겸의 난이 제압되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의 포상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포상이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기록대로 5월 을해일에 왕의 명령에 의하여 논공행상이 시작된 것이라면 18일 만에 공로자 명단 작성과 공적 심사, 결재 및 포상 실시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해석되므로 군공 포상의 전 과정이 빠르게는 18일 만에도 완료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군공 포상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포상 실시 장소를 언급하거나, 혹은 장소를 추론할 만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사례 역시 극히 적다. 우선 국왕의 이동 중 전장 혹은 행궁 등에서 포상을 실시하는 사례가 있다. 태조 13년(930) 古昌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태조가 城主 김선평 등을 포상한 사례가 있고³⁰⁾ 현종대 몽진 중 혹은 환궁 중 실시한 경우가 있다.³¹⁾ 북방의 변경 지역에서 전투가 진행되는 중에는 특별히 사신을 현장에 파견하여 포상을 시행하는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³²⁾

-
- 29) 『高麗史』 卷15 仁宗 4年(1126) (5월) 丁亥 宣旨 朕以幼冲承襲祖業 意欲倚賴外家事無大小 一切委任 而縱爲貪暴 殘民害國 朕雖知之無以防閑 至今月二十日患起倉卒 判兵部事拓俊京 倡義定難 功不可忘 宜令所司 論功懋賞 軍器少監崔思全 同心密輔 可并賞功
『高麗史』 卷15 仁宗 4年(1126) (6월) 乙巳 以拓俊京檢校太師守太保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李公壽判吏部事 金珣爲戶部尙書知門下省事 崔思全爲兵部尙書
- 30) 『高麗史節要』 卷1 太祖 13年(930) (春正月)
- 31) 『高麗史節要』 卷3 顯宗 2年(1011) 正月 辛巳·庚寅·癸卯; 2月 丁未
현종은 그로부터 20일 뒤인 2월 丁卯일에 환궁하였다(『高麗史節要』 卷3 顯宗 2年(1011) 2月 丁卯 還京都 入御壽昌宮).
- 32) 『高麗史節要』 卷5 文宗 34年(1080) 12月 東蕃作亂 以中書侍郎平章事文正 判行營兵馬事 同知中樞院事崔爽 兵部尙書廉漢爲兵馬使 左承宣李顥 爲兵馬副使 將步騎三萬出屯定州 … 王遣左司員外郎裴緯 勅文正等 … 特賜文正 銀合一副 重一百兩 崔

이의 대부분의 군공 포상 사례는 조정에서 포상이 시행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전투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행궁이건 개경의 궁궐이건 모두 왕이 있는 곳에서 포상을 시행하였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국왕의 앞에서 포상이 시행되면 이 의례를 통해 포상의 시행 주체인 국왕의 위상이 피포상자에게 분명하게 각인되었을 것이다. 군공 포상을 통한 개인의 국왕 및 국가에 대한 君臣 관계를 한층 특별히 하는 효과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현종대 거란과의 전쟁 중 사망한 양규에 대한 여러 포상 중 그 부인에게 상을 내렸던 경우³³⁾와 인종대 이자겸에 대한 포상 사례는³⁴⁾ 각각 자택에서 포상을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군공 포상의 사례는 아니지만 고려 초에 개인의 영예를 위해 宣麻를 집에서 반포하는 사례가 참고 된다.³⁵⁾ 조정에서 임명장을 주는 것 보다 자택에서 주는 것을 더 영예롭게 여겨졌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례를 양규와 이자겸의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듯하다. 이자겸의 경우는 개인적 영예를 강조하기 위해 자택에서 포상을 실시했다고 볼 수 있지만, 양규의 경우는

爽廉漢李顛銀各一副 重各五十兩 竝盛丁香

『高麗史』卷12 睿宗 3年(1108) 夏四月 壬午 以尹瓘爲門下侍中判尙書吏部事知軍國重事 吳延寵爲尙書左僕射參知政事 遣內侍郎中韓暾如 齋詔書告身及紫繡鞍具廐馬二匹 至雄州分賜之

- 33) 『高麗史節要』卷3 顯宗 2年(1011) (4月) 命有司 給楊規妻 殷栗郡君洪氏粟 授子帶春 校書郎 王親製敎 賜洪氏曰 汝夫才全將略 兼識治道 效節輸誠 忠貞罕比 昨於北境 追捕寇賊 城鎮得全 累多捷勝 乃至隕亡 常思厥功 歲賜汝 稻穀一百石 以終其身
- 34) 『高麗史節要』卷9 仁宗 2年(1124) (7月) 遣使冊李資謙 爲亮節翼命功臣 領門下尙書 都省事 判吏兵部 西京留守事 朝鮮國公 食邑八千戶 食實封二千戶 府號崇德 宮曰懿親
- 35) 『高麗史』卷5 德宗 元年(1032) (8月) 丁巳 以李端爲平章事 皇甫俞義爲吏部尙書參知政事; 『高麗史節要』卷4 德宗 元年(1032) 以李端爲平章事 皇甫俞義爲吏部尙書參知政事 舊制宣麻於家 至是集百官 宣於乾德殿
『高麗史節要』卷4 德宗 2年(1033) 3月 敎曰 頃以有司論請 停宣送官告 然念恩禮 由此漸疏 今後文武正三品以上 及中樞員 皆令差人到家 宣制

그 부인에게 내리는 포상이었으므로 관인신분이 아닌 피포상자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자택에서 포상을 시행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두 경우 모두 예외적인 사례라 정리해 둔다.

이외에 고려 전기 군공 포상 시행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례 두 건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종 22년(1068) 6월 椒島에서 적선을 물리친 장졸에 대한 포상 명단은 특이하게도 관관, 녹사, 장군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³⁶⁾ 보통의 포상 기사에서 관품이 높은 지휘관이 먼저 언급되는 것과는 대조되는 사례인데, 功의 대소가 현저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러한 순으로 기록에 남은 것이 아닐까 짐작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장에 파견되었던 지휘관급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포상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사례도 있다. 문종 34년(1080) 12월, 定州 부근에서 동여진이 소요를 일으키자 고려 조정은 中書侍郎平章事 文正을 判行營兵馬事로, 同知中樞院事(중2) 崔奭과 兵部尙書(정3) 廉漢을 兵馬使로, 左承宣 李顥를 兵馬副使로 임명하여 출전하게 하였다. 이들이 392級을 참수하고 渠帥 39인을 사로잡는 등 큰 전공을 세우자 조정은 행영병마사인 문정에게는 丁香을 담은 무게 100兩짜리 銀合一副를 내리고, 최석과 염한, 이의 등에게는 각각 정향을 담은 무게 50兩짜리 은합을 하나씩 하사하였다.³⁷⁾ 지급된 부상의 규모로 볼 때 최석과 염한, 이의는 같은 등급의 대우를 받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들이 조정으로 복귀

36) 『高麗史』卷8 文宗 22年(1068) (6月) 庚申 東界兵馬使奏 判官任希悅·錄事鄭申·將軍巨興等 乘戰艦 巡行椒島 遇賊船十艘 與戰敗之 獲七艘 俘斬甚多 王嘉之 賜希悅等 便服一襲 金鍍銀帶一腰 諸有戰功者 悉加爵賞

37) 『高麗史節要』卷5 文宗 34年(1080) 12月 東蕃作亂 以中書侍郎平章事文正 判行營兵馬事 同知中樞院事崔奭 兵部尙書廉漢爲兵馬使 左承宣李顥 爲兵馬副使 將步騎三萬出屯定州 … 王遣左司員外郎裴緯 勅文正等 … 特賜文正 銀合一副 重一百兩 奭廉漢李顥銀合各一副 重各五十兩 崱盛丁香

한 뒤 문종 35년(1081) 정월에 염한은 前職 그대로 병부상서로 임명되었고³⁸⁾ 반면 최석은 종2품을 유지한 채 중복직을 겸대하여 吏部尙書(정3) · 叅知政事(종2)로 임명되었다. 이들과 함께 전장에 참여했던 문정은 推忠贊化蕩寇靜塞功臣이라는 공신호와 特進上柱國長淵縣開國伯이라는 봉작까지 받았다.³⁹⁾ 문정이 봉작되던 날 최석의 인사발령도 함께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을 검토할 때 최석의 인사발령은 특별히 공로에 대한 포상이라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면 같은 전역에 참여한 지휘관급의 문정, 최석, 염한, 이의 중 총지휘관격인 문정만 蕩寇 및 靜塞의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되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자주 확인되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고려 조정에서 군공을 포상할 때 전장에서 전투 성과에 따른 즉각적인 포상과 전역이 마무리된 이후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과정을 반드시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된다. 또한 전장에서 이루어지는 즉각적 포상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다소 관대하게 행해졌고, 서열 혹은 계급에 따라 실시되었으리라는 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위 두 사례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실제 시행된 포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고려 조정의 군공자 선별 및 포상 기준이 적어도 문종대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한다.

계속해서 군공자들이 지급받은 실질적인 혜택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다음 절에서 확인해 보자.

38) 『高麗史』 卷9 文宗 35年(1081) 春正月 乙未 以廉漢爲兵部尙書

39) 『高麗史』 卷9 文宗 35年(1081) (春正月) 丁酉 以文正爲長淵縣開國伯 崔爽爲吏部尙書 叅知政事 金良鑑叅知政事判尙書兵部事

문정의 공신호 책봉은 다음 기사에서 확인된다.

『高麗史節要』 卷5 文宗 35年(1081) 春正月 以文正爲推忠贊化蕩寇靜塞功臣 特進上柱國 長淵縣開國伯 食邑一千戶 食實封二百戶 崔爽檢校司空 吏部尙書 叅知政事 判三司事 柱國 金良鑑 叅知政事 判尙書兵部事 兼西京留守使 柱國 廉漢 爲兵部尙書

2. 포상 내용

인종 7년(1136)에는 군공자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아. 仁宗 14년(1136) (5월) 기묘, 조하였다. “중군한 장졸로 공이 있는 자와 군진에서 사망한 자는 정해년(의 예)에 의거하여 논상하라.”⁴⁰⁾

정해년은 예종 2년(1107)에 해당하는데, 이때에는 2차 여진 정벌이 수행되었다. 성공적인 정벌을 축하하며 군공을 세운 인물들에 대한 포상이 시행되었으리라 추정되나 현전하는 기록 상으로는 예종대의 포상 기준이나 내용, 포상자 명단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1136년 당시에는 이를 선례로 언급할 수 있었을 만큼 그 포상 내용이 자세하게 전해졌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비단 이 사례 뿐 아니라 고려 전기 군공 포상 사례는 단순히 賜物, 賜貨物, 褒賞, 加賞, 獎之 등과 같이 기록하여 그 내용이 생략된 경우가 훨씬 많다. 군공 포상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포상 시 주어진 부상을 정리하여 기록에 남지 않은 포상 내역을 짐작해 보는 방법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이하에서는 고려 전기 군공 포상의 핵심적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겠다.

단, 이하에서 살필 내용은 군공 포상의 개별 사례에 제한된다는 점을 밝혀둔다. 개별 포상 사례와 구분되는 조치로는 참전 중 사망한 군인의 부인에 대한 구분전 지급,⁴¹⁾ 중외에서 전사한 자들의 시신 수습 및 護喪⁴²⁾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치 역시 군공 포상의 한 형태임은 분명하

40) 『高麗史』 卷16 仁宗 14年(1136) (5월) 己卯 詔曰 … 從軍將卒有功者 及陣亡者 依丁亥年 論賞

41)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口分田 文宗 2月判

다. 그러나 이 조치들은 대상자의 자격 조건이 매우 분명하여 개별 심사나 논의 없이도 시행되는 포상이었으므로 시행 사례들이 별도로 기록에 남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들은 해당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기본적 조치였을 것임을 전제하고 군공 포상의 개별 사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고려 전기의 군공에 대한 포상에 주어지는 부상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곡식이나 토지, 직물, 금은기와 같은 현물이 지급되는 경우와階·職·爵 등의 관함이 수여되는 경우가 대부분에 해당하는데, 이외에도 郡號를 승격 한다던가 사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해 사찰을 건립하는 등의 포상 조치도 간혹 시행되었다. 각 사례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1) 현물 지급

가. 곡식

고려 전기 군공자 포상 시 지급되었던 부상으로 기록 상 가장 먼저 확인되는 현물은 곡식류이다. 포상으로 지급된 곡식류는 穀·米·粟·稻 穀·米麥·米穀 등으로 기록되었고 지급액 역시 1인당 50석에서 많게는 300석에 달하는 등 일정한 기준이나 경향성을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국초 功役者에게 25석에서 12석까지 차등 지급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⁴³⁾ 이 사례는 녹봉제의 시원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와 비교해 보면 군공 포상 시 지급량이 확인되는 사례는 50석~300석에 달하므로 곡식이 부상으로 지급된 군공 포상은 그 규모가 상당히 큰 포상이었다고 하겠다.

42) 『高麗史』卷4 顯宗 2年(1011) (4月) 丁巳 命有司 收瘞中外戰死骸骨 祭之

43) 『高麗史』卷2 光宗 卽位年(949) 秋八月 命大匡朴守卿等 攷定國初有功役者 賜四役者米二十五碩 三役者二十碩 二役者十五碩 一役者十二碩 以爲例食

다만 지급되는 곡식류의 종류나 도정 상태가 동일한 표현으로 지칭되지 않았고, 공로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어느 정도의 균공으로 얼마만큼의 곡물을 수령할 수 있었는지 명확하게 정리하기는 어렵다. 고려시대 농토의 다수를 차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하등전 토지 1결의 소출을 7~10석으로 볼 때⁴⁴⁾ 토지 5결~30결 정도의 소출을 상으로 받은 것으로 단순 환산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태조대~광종대에는 공로를 세운 당사자에게 곡식류가 지급되었지만 현종대 이후에는 사망하거나 국외에 억류 중인 사람을 대신하여 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경향⁴⁵⁾을 보인다는 점이다. 곡식류가 일종의 부의물로서도 활용되었던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표 1】 곡식이 균공 포상의 부상으로 지급된 사례⁴⁶⁾

연번	연도	지급 내용
1	921(태조 4) 2. 입신(15)	命賜有功者穀人五十石
2	1011(현종 2) 4.	給楊規妻 殷栗郡君洪氏粟(歲賜汝 稻穀一百石 以終其身)
3	1011(현종 2) 4.	米布有差
4	1011(현종 2) 8.	歲給粟五十碩 以終其身
5	1016(현종 7) 1.	賻其家米五十碩 麥三十碩 布一百匹
6	1019(현종 10) 3. 계해	賜其家米麥 有差
7	1020(현종 11). 2. 기축	特加官 賜衣糧
8	1020(현종 11). 3. (정묘)	穀三百碩
9	1109(예종 4). 5.	酒食 及銀一錠 粳米一十碩
10	1140(인종 18). 10.	金銀鞍馬 米布藥物

44) 『高麗史』 卷78 志32 食貨1 田制 租稅 成宗 11年(992)

45) 예를 들어 거란에 억류되었던 고려 사신들의 부인에게 곡식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高麗史』 卷4 顯宗 11年(1020) (2月) 甲辰 以門下侍郎陳頤 李禮均 內史侍郎王同穎 司宰卿尹餘 將作少監王佐暹 少府丞金德華 將作注簿金徵祐 太醫監金得宏 被留契丹 各賜其妻米穀有差 封佐暹妻爲開城郡君 子夷甫授禮部主事

46) 이하의 표는 부상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상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를 요약·제시하였다. 따라서 표 속에서 포상 시기가 같게 나타나도 포상 원인을 달리

나. 토지

군공에 대한 현물 지급 품목으로 곡식류에 뒤이어 등장하는 것은 토지이다. 소모성이 큰 곡물류와 비교할 때 토지는 전근대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생산 수단이었으며 영속적인 재산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토지 지급은 상당히 큰 부상에 해당했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나 고려 조정에서 포상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사례는 태조대 役分田 지급 사례 이외에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토지의 지급이 어느 정도의 포상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사례 상 토지의 최대 지급액은 30결로 확인되며, 이 토지의 등급에 따라 포상의 실제 내용은 더 커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가 부상으로 활용된 사례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이는 아무래도 官衙 수여와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뒤에 살펴보듯이 관함 수여가 군공 포상에 대한 부상 중 가장 많이 확인되는데, 관함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시과 제도 등에서 나타나듯이 관함의 수여는 기본적으로 토지 지급을 수반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군공 포상 시 관함을 수여하지 않고 토지를 지급하는 사례가 이례적인 포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표 2】 토지가 군공 포상의 부상으로 지급된 사례

연번	연도	지급 내용
1	1011(현종 2) 2. 정미	田三十結
2	1012(현종 3) 7.	可賜良田
3	1016(현종 7) 11.	良田二十結
4	1126(인종 4). 6. 을사	奴婢一口 田三十結

하는 별개의 사례임을 밝혀둔다.

다. 직물류

군공 포상시 지급된 직물류를 지칭하는 표현은 錦繡綺被褥, 綾羅, 布帛, 布, 絹, 紬, 衣, 衣物, 衣著, 衣對, 綵段, 匹段, 便服一襲, 金鍍銀帶一腰, 銀絹, 綾羅, 幣帛, 錦彩帛, 金帶 등으로, 그 종류가 매우 많으며 필단의 형태대로 지급된 경우는 물론, 의복이 지급된 사례도 있다. 시기적으로는 태조대부터 인종대까지 지속적으로 포상품으로 활용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곡식류나 금은기 등과의 혼합 포상 사례도 적지 않다. 여진인에게 직물류가 지급되었고⁴⁷⁾ 변경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 혹은 반적을 진압하러 파견된 장수들에게 직물류가 지급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동 및 운반에 편리한 부상으로써 직물류가 선택된 것이 아닌가 한다.

【표 3】 직물이 군공 포상의 부상으로 지급된 사례

연번	연도	지급 내용
1	918(태조 1) 8.	第一等 給金銀器錦繡綺被褥綾羅布帛 有差 第二等 給金銀器錦繡綺被褥綾帛 有差 第三等 二千餘人 各給綾帛穀米 有差
2	1011(현종 2) 4.	米布有差
3	1016(현종 7) 1.	賻其家米五十碩麥三十碩布一百匹
4	1018(현종 9) 10.	絹紬布五百餘匹
5	1020(현종 11). 2. 기축	特加官 賜衣糧
6	1025(현종 16). 1. 신혜	加授大匡 優賜衣物
7	1040(정종 6). 2.	衣著 有差
8	1051(문종 5). 9. 기유	衣對 綵段 銀器 匹段
9	1068(문종 22). 6. 경신	便服一襲 金鍍銀帶一腰 諸有戰功者 悉加爵賞

47) 『高麗史』 卷4 顯宗 9年(1018) (10月) 丁未 賜龜州女眞木史等三十四人 絹紬布五百餘匹 以賞捕賊功; 같은 책, 顯宗 16年(1025) (正月) 辛亥 女眞酋長毛逸羅來朝 以有功邊圉 加授大匡優賜衣物

고려 전기 軍功者 포상의 절차와 내용

10	1097(숙종 2). 7. 임신	銀絹 茶藥
11	1102(숙종 7). 11. 임신	衣一襲
12	1107(예종 2). 12. 병신	綾羅三十匹
13	1135(인종 13). 1. 병진	幣帛有差
14	1135(인종 13). 1. 병진	賜錦彩帛
15	1136(인종 14). 3. 을사	衣服鞍馬金帶金酒器香藥
		金帶
		銀絹綾羅有差
16	1140(인종 18). 10.	金銀鞍馬 米布藥物

라. 금은기류

금은기는 태조대 개국유공자에게 지급된 사례를 제외하고는 주로 11세기 후반 문종대 이후에 나타나며, 주로 은기가 지급되었다. 은기는 銀櫛처럼 기명이 특정되는 사례도 있고, 약이나 향을 담아주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직물류, 술 등과 함께 지급되는 사례도 확인된다. 인종 13년(1135) 정월의 사례를 보면 官僚와 長吏·將校에게 지급되는 부상이 구분되어 있는데, “관료”들에게만 은기를 지급하였다는 점도 특이하다. 장리 등에게 수여된 직물류와 비교하면 관료들에게 가치가 더 높은 부상이 주어졌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官錢 혹은 은병은 숙종대 주전 정책의 시행 이후 숙종·예종대에 포상으로 활용되었다.

【표 4】 금은기가 군공 포상의 부상으로 지급된 사례

연번	연도	지급 내용
1	918(태조 1) 8.	第一等 給金銀器錦繡綺被褥綾羅布帛 有差 第二等 給金銀器錦繡綺被褥綾帛 有差 第三等 二千餘人 各給綾帛穀米 有差
2	1051(문종 5). 9. 기유	衣對 綵段 銀器
3	1068(문종 22). 6. 경신	便服一襲 金鍍銀帶一腰
4	1073(문종 27). 6. 병신	銀藥合各一事

5	1080(문종 34). 12.	銀合一副 重一百兩 盛丁香
		銀合各一副 重各五十兩 竝盛丁香
6	1104(숙종 9). 7. 신축	出官錢 賜有差
7	1108(예종 3). 3.	銀繡羅一面 銀瓶四十隻
8	1109(예종 4). 2. 을미	酒及銀瓶二事
9	1109(예종 4). 2. (계묘)	銀槩
10	1109(예종 4). 5.	酒食 及銀一錠 粳米一十碩
11	1126(인종 4). 2. 신유	內帑銀幣
12	1135(인종 13). 1. 병진	藥一銀合
13	1135(인종 13). 1. (을축)	賜銀藥合
14	1136(인종 14). 3. 을사	衣服 鞍馬 金帶 金酒器 香藥
		金帶
		銀絹綾羅有差
15	1140(인종 18). 10.	金銀鞍馬

마. 그 외의 현물

그 외 군공자에 대해 약, 노비, 차, 향, 말, 술, 집 등이 부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드물기는 하지만 확인된다.

【표 5】 군공 포상의 기타 부상

연번	연도	지급 내용
1	1045(정종 11). 5. (병인)	各賜內廐馬
2	1080(문종 34). 12.	銀合一副 重一百兩 盛丁香
		銀合各一副 重各五十兩 竝盛丁香
3	1097(숙종 2). 7. 임신	銀絹 茶藥
4	1108(예종 3). 3.	羊酒
		銀繡羅一面 銀瓶四十隻
5	1109(예종 4). 2. 을미	酒及銀瓶二事
6	1109(예종 4). 5.	酒食 及銀一錠 粳米一十碩
7	1126(인종 4). 6. 을사	賜衣服金銀器 布帛鞍馬
		及奴婢一十口 田三十結

8	1135(인종 13). 1. 을묘	拜官賜居第
9	1135(인종 13). 1. 병진	藥一銀合
10	1135(인종 13). 1. (을축)	賜銀藥合
11	1136(인종 14). 3. 을사	衣服鞍馬金帶金酒器香藥
12	1136(인종 14). 4. 경자	賜富軾甲第一區
13	1140(인종 18). 10.	金銀鞍馬 米布藥物

2) 官銜 수여

현종 초년에 거란과의 전쟁 중 군공을 세운 병사들을 포상하는 사례 중 다음의 두 기사에서는 군공자의 생존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 자-1. 현종 7년(1016) 7월 갑진. 도병마사가 아뢰기를, “장군 고적여와 중랑장 서공, 낭장 수기 등 3천1백8인은 일찍이 통주의 전역에서 (적을) 죽이고 (전리품을) 얻은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청컨대 **생존 여부와 상관없이** 職 一級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니 따랐다.⁴⁸⁾
- 자-2. 현종 9년(1018) (5월) 임오. 교하였다. “을묘년 거란이 쳐들어 왔을 때 여러 주진의 장졸로 공적이 있는 자는 級을 더하여 주고 **사망한 자는** 특별히 부의를 더하여 지급하라.”⁴⁹⁾

위 두 기록은 군공자의 생물 여부가 군공 포상 시 고려되는 기준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된다. 고려 전기 군공 포상에 수반하는 관함 수여 사례 역시 생존자에 대한 加職과 사망자에 대한 추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관함 수여 사례를 생존 인물에 대한 경우와 사망자에 대한 경우로 구분하였고, 생존 인물에 대한 경

48) 『高麗史』卷4 顯宗 7年(1016) 秋七月 甲辰 都兵馬使奏 將軍高積餘 中郎將徐肯 郎將守岳等三千一百八人 曾於通州之役 殺獲甚多 請不拘存沒 增職一級 從之

49) 『高麗史』卷4 顯宗 9年(1018) (5月) 壬午 教 乙卯年契丹入寇之時 諸州鎮將卒 有功績者 增級 死者 優加轉贈

우는 구체적 관함의 확인되는 사례(가)와 그렇지 않은 사례(나)로 세분하여 정리해 보겠다.

가. 구체적 관함 수여 사례

먼저 군공에 대해 관함 수여를 통해 포상하는 사례 중 관함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확인 되는 사례를 분석해 보겠다. 태조대에는 주로 官階를 승급해 주는 형태의 포상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군공에 대한 포상이라는 의미 외에, 새롭게 건국된 고려 왕조 체제 외의 집단을 지배 체제 내로 수용하는 효과도 갖는다. 체제 밖의 세력을 포섭하는 과정이 군공에 대한 포상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웠을 것이고, 피포상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유리한 위상으로 왕건을 중심으로 한 지배 질서에 편입되는 인상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렇듯 태조대의 군공 포상은 신생 국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전하는 기록 외에도 유사한 형태의 포상이 많이 이루어졌으리라 추정된다.

부상으로 지급된 관함의 사례를 정리해 보면 우선 현종대에는 하위 관인층에서는 향직(9품)이 수여되거나 정7품에서 정6품으로 승급 사례가 있고, 상위 관인층에서는 정4품에서 종3품으로의 승급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포상 시점 이전 관품이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지만 정2~3품직에 임명되는 포상 기사도 확인되는데, 이미 고위 관직에 올라있는 자들에 대한 포상이므로 승급 폭이 월등하게 넓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종대 군공에 대한 관함 수여 역시 현종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하위 관인층에서는 품외의 인원에게 9품의 향직이 수여되거나 정8품직이 수여되는 사례가 있었고 역모를 고변하는 등 상대적으로 큰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사가 정4품 장군직에 보임되기도 했으며 입사가 불가한 출신이 한직허통되는 사례도 확인된다.

고려 전기 軍功者 포상의 절차와 내용

외적과의 갈등 상황에서 군공이 발생하였던 이전과 달리, 현종대 이후에는 정치적 변란 과정 속에서 군공을 세우는 경우가 증가하며 이들에 대한 포상은 주로 공신희 수여로 나타난다. 숙종·예종대의 여진정벌에서는 주로 말단 관직자들에 대한 6~8품직 임명이 있었고, 상위 관직자들의 경우는 관품의 超授 보다는 재신 내부에서의 서열 상승이라던가 공신희 수여 등의 포상이 이루어졌다.

【표 6】 관함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군공 포상 사례

연번	연도	陞職 내용	
		前職銜 ⁵⁰⁾	포상 결과
1	925(태조 8) 10.	(元尹)(국초관계6품)	→ 元甫(국초관계4품)
2	930(태조 13) 1.	古昌城主	→ 大匡(국초관계2품)
		(古昌)郡	→ 大相(국초관계4품)
3	949(광종 즉위). 8.		→ 功臣
			→ 大丞(국초관계3품)
4	1011(현종 2) 1.	(將卒)	→ 中尹(향직9품)
5	1011(현종 2) 1.	通事舍人(정7품)	→ 都兵馬錄事(甲科權務)
		別將(정7품)	→ 親從郎將(정6품)
6	1011(현종 2) 1.	吏部侍郎(정4품)	→ 秘書監(중3품)
		安北都護府使 工部侍郎(정4품)	→ 司宰卿(중3품)
			→ 禮部侍郎(정4품)中樞院直學士(정3품)
7	1013(현종 4) 9.		→ 大匡(국초관계2품)
8	1014(현종 5) 2.		→ 郎將(정6품)
9	1018(현종 9) 5.	(東北面行營兵馬使)	→ 西京留守·內史侍郎平章事(정2품)
10	1019(현종 10) 10.		→ 功臣
11	1019(현종 10) 12.		→ 功臣
12	1024(현종 15). 4.		→ 功臣

사학연구 제119호(2015. 9)

13	1024(현종 15). 5. 경술		→ 功臣	
14	1025(현종 16). 1. 신해		→ 大匡(향직2품)	
15	1031(현종 22). 11.		錄功科	
16	1032(덕종 1). 2. 임인	振威副尉(종6품)戶長(향리)	→ 郎將(정5품)	
		別將(정7품)	→ 郎將(정5품)	
17	1034(덕종 3). 4. 정미		→ 功臣	
18	1040(정종 6). 6.	校尉(정9품)	→ 郎將(정5품)	
19	1044(정종 10). 11. 을해	1科	別將(정7품)이상	超正職一級 父母封爵
			隊正(품외)~散員(정8품)	超鄉職一級
		2科	隊正(품외) 이상, 船頭	加正鄉職一級
			軍人, 梢工, 水手	加鄉職
20	1046(문종 즉). 7. 신사	水軍	→ 中尹(향직9품)	
21	1072(문종 26). 7. 병오	兵士	→ 將軍(정4품)	
22	1071(문종 25).	入仕不可者	許通任用(限大將軍(종3품))	
23	1073(문종 27). 7. 병오	(黑水譯語)	→ 監門衛散員(정8품)	
24	1081(문종 35). 1. 정유		→ 功臣	
25	1095(현종 1). 7. 계해	(中書侍郎平章事(정2품)·判刑兵部事)	→ 權判吏部事	
		(權尙書兵部事)	→ 權判兵部事	
26	1095(현종 1). 7. 추정	(胥史)	→ 都校令(종8품)	
27	1104(숙종 9). 2.	別駕(人吏)	→ 千牛衛錄事參軍事(정8품)	
28	1107(예종 2). 12. 병신	(兵馬)錄事	→ 職七品	
29	1108(예종 3). 1. 을축	(병마녹사)	→ 閣門祗候(정7품)	
30	1108(예종 3). 4. 임오		→ 功臣	
31	1108(예종 3). 9. 무신		→ 封爵(伯)	
			→ 功臣	
32	1109. 추정	中軍錄事(품외)	→ 監察御史(종6품)	
33	1126(인종 4). 6. 을사	(門下侍郎(정2품)·判兵部事)	→ 功臣 + 檢校太師守太保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정2품) 判戶部事兼西京留守使上柱國	
			→ 郡大夫(정4품)	
		(門下侍郎平章事(정2품)·判禮部事)	→ 功臣 + 判吏部事	
		(同知樞密院事(종2품))	→ 功臣 + 戶部尙書(정3품)	

고려 전기 軍功者 포상의 절차와 내용

			知門下省事(종2품)
		(軍器少監(종5품))	→ 兵部尙書(정3품)
34	1126(인종 4). 12. 경진		→ 功臣
35	1128(인종 6). 8. 갑술		→ 功臣
36	1131(인종 9). 9. 병신		→ 功臣
			→ 功臣
37	1136(인종 14). 3. 계미		→ 功臣
38	1136. 추정	(都兵馬使)	→ 樞密院 左副承宣(정3품)
39	1170(명종 즉). 10. 경술		→ 功臣

나. 구체적 관함미 확인되지 않는 사례

생존한 군공자들에게 관함미 수여된 것은 분명하나,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職을 더하여 주었다는 식의 표현(加職, 增職, 授職), 級을 올려주었다는 식의 표현(增級, 贈職級)과 爵을 내려주거나 올려주었다는 기록(增爵一級, 賜爵, 加爵) 및 계와 직을 올려주었다는 표현(增階職)도 확인된다.

加次第職과 같은 표현은 고려 관직 체계 상 적어도 일부에서는 승진의 경로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하게 하는데, 아마도 무반에 해당하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 추증 사례

고려 전기 군공자에 대한 추증 사례를 검토해 보면, 생존자에 대한 加

50) 괄호 안에 표시된 직함은 포상 기사 상에서 現職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아래의 연구 등을 참조하여 포상 전의 직함을 확인한 것이다. 이하의 표에서도 마찬가지로임을 밝혀 둔다.

朴龍雲, 2000, 『고려시대 中書門下省宰臣 연구』, 一志社

朴龍雲, 2000, 『高麗時代 尙書省 研究』, 景仁文化社

朴龍雲, 2001, 『高麗時代 中樞院 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職이 주로 1~2품 내에서 행해지던 것에 비해 사망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1~3품의 범위 내에서 추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추증되는 관직의 범위 역시 제한되지 않고 전 관직을 대상으로 추증이 시행되고 있어 贈官에 있어서의 특별한 계열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사망자 추증 사례에서도 贈職一級·加次第職과 같은 표현들이 확인되는데, 이것이 관품인지 아니면 그보다 세분된 기준의 승급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수 없다. 다만 1148년(의종 2) 11월 金守雌의 경우, 吏部에서 官爵을 추증할 것을 청하였는데 吏部侍郎·翰林侍讀學士라는 관직이 내려졌다.⁵¹⁾ 비록 군공에 대한 포상은 아니지만 이에 비추어 볼 때 官爵은 말 그대로 작위를 의미하기보다는 관함과 같은 관직·위계 등을 표현하는 범칭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7】 추증된 군공 포상 사례

연번	연도	陸職 내용	
1	1011(현종 2). 2.	刑部郎中(정5품)	→ 工部尙書(정3품)
		別將(정7품)	→ 將軍(정4품)
2	1011(현종 2). 4.	中丞(정4품)	→ 禮賓卿(정3품)
3	1011(현종 2). 7.		→ 首座
4	1016(현종 7). 1.	大將軍(정3품)	→ 尙書右僕射(정2품)上柱國
		別將(정7품)	→ 將軍(정4품)
		散員(정8품)	→ 中郎將(정5품)
		校尉(정9품)	→ 郎將(정6품)
		太醫丞(정8품)	→ 尙藥奉御(정6품)
		太史丞(정7품)	→ 太史令(정5품)

51) 『高麗史節要』卷11 懿宗 2年(1148) (11月) 贈故禮州防禦使金守雌 爲吏部侍郎翰林侍讀學士 吏部奏 守雌 於丙午之亂 以直史館入直 不惜身命 移藏國史 俾得完全 昔唐韋述爲史官 祿山之亂 抱國史 藏南山 身陷賊 汙僞官 賊平 流渝州死 廣德初 以功補過 贈右散騎常侍 終汙僞官 至於流死 猶論其功 今守雌一無所累 例補外官而死 未蒙顯賞 深可惜也 乞依古例 追贈官爵 故有是命

고려 전기 軍功者 포상의 절차와 내용

5	1016(현종 7). 7.		增職一級
6	1019(현종 10). 3. 계해		贈官
7	1032(덕종 1). 2. 임인	別將(정7품)	→ 郎將(정6품)
8	1032(덕종 1). 3. 무술		→ 少府監(정4품)
			→ 軍器監(정4품)
			→ 禮賓少卿(중4품)
			→ 衛尉少卿(중4품)
			→ 少府少監(중4품)
		→ 殿中丞(중5품)	
9	1036(정종 2). 7. 임진	大史丞(중7품)	→ 軍器少監(중5품)
10	1042(정종 8). 6. (병술)		加職賞
11	1046(문종 즉위). 7. 무오	靜邊鎮別將(정7품)	→ 金吾衛郎將(정6품)
12	1021(문종 6). 8. 계유		→ 左右衛上將軍(정3품)
13	1021(문종 6). 8. 계유	左司郎中(정5품)	→ 尙書工部侍郎(정4품)
14	1052(문종 6). 10. 병술		→ 興威衛上將軍(정3품)
15	1054(문종 8). 12.		追贈 次第職
16	1067(문종 21). 3. 계사	門下侍中(중1품)	→ 守太師兼中書令(중1품)
17	1084(선종 1). 8. 임신		→ 功臣
18	1108(예종 3). 8. 계사	兵馬判官(소경(중4품)이하)	→ 兵部侍郎(정4품)知御史臺事(중4품)
		將軍(정4품)	→ 上將軍(정3품)兵部尙書(정3품)
19	1126(인종 4). 3.		→ 守司空左僕射(정2품)
		祗候(정7품)/內侍	→ 戶部員外郎(정6품)
		錄事(8품 ~ 권무)	→ 閤門祗候(정7품)

3) 기타

군공 포상의 부상으로는 현물과 관함 이외에도 사찰이나 신사를 지어 주거나⁵²⁾ 출신 군현의 지위를 승격시키는 경우⁵³⁾가 있었고, 특채기회를

52) 『高麗史節要』 卷1 太祖 10年 9月 · 『高麗史』 卷92 列傳5 洪儒 附 申崇謙; 『高麗史節要』 卷3 顯宗 2年(1015) (2月 丁巳)

53) 『高麗史節要』 卷1 太祖 13年(930) (春正月)

주거나⁵⁴⁾ 외직 출사를 면제해 주기도 했으며⁵⁵⁾, 범법자의 경우 귀향지 등에서 소환한 사례⁵⁶⁾, 門閭에 旌表하는 사례⁵⁷⁾, 圖形閣上하는 사례⁵⁸⁾ 등도 있었다.

맺음말

지금까지 고려 전기 군공자에 대한 포상 사례를 통해 군공 포상의 결정 과정 및 시행 상의 특이점, 포상 시 지급된 부상의 종류와 특징 등을 정리해 보았다.

군공 포상은 초기에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건의 등 필요에 따라 시행되다가 현종대 전후 처리 경험이 관례화되며 점차 제도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고 정리해 보았다. 이에 따라 군공 포상 업무를 특정 기구에서 주관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병부에서 공적을 정리하고 포상 내용까지 발의하다가 점차 양계 병마사가 담당하는 형태로 변화되었다. 병마사는 군공 포상자 선정, 공적 검토 및 심사와 같은 실무 절차를 주관하였으며, 이를 도병마사에서 총괄 검토하여 상주하면 국왕의 최종 결재로 군공 포상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군공 포상이 실제 시행되는 데에는 어느 정

54) 『高麗史』 卷6 靖宗 7年(1041) (五月) 丙辰; 『高麗史節要』 卷6 獻宗 元年(肅宗 卽位年, 1095) 11月

55) 『高麗史節要』 卷5 文宗 14年(1060) 3月

56) 『高麗史節要』 卷9 仁宗 4年(1126) 10月

57) 『高麗史節要』 卷10 仁宗 14年(1136) 2月

58) 『高麗史節要』 卷4 靖宗 12年(1046) 11月; 『高麗史』 卷7 文宗 6年(1052) (5月) 戊午; 『高麗史節要』 卷4 文宗 6年(1052) (5月); 같은 책, 卷9 仁宗 4年(1126) 閏11月

도의 시일이 걸렸는지 명확하게 정리하기는 어려웠다. 경우에 따라 논의에서 시행까지 18일 만에 완료되는 사례도 있었지만 길게는 功으로 인정되는 행위가 발생한 지 2~3년 뒤에 포상이 집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군공 포상은 주로 국왕의 앞에서 시행되었다고 생각되며 예외적으로 피포상자의 자택에서 시행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 국왕이 주재하는 곳에서의 군공자 포상은 포상 대상에게 특별한 영예로 여겨졌을 것이며, 이에 따라 포상 주체인 국왕에 대한 충성을 한층 강화하는 의례적 효과도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군공자 선별 기준 및 포상 방식은 늦어도 문종대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정리해 보았다.

군공 포상 시 주어진 부상은 크게 현물과 관함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물은 곡식·토지·직물·금은기 등이 지급되었다. 관함의 지급 역시 매우 다양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일정한 규칙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점은 본고의 분명한 한계이다. 아울러 고려 전기에 시행된 군공 포상이 국정 운영 혹은 통치 체제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어떠한 효용과 기능을 담당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본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려 전기의 사례 뿐 아니라 전 시기의 군공 포상 사례를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개별 포상 사례를 전체적인 역사 상 속에서 검토해 보면 보다 분명한 의미와 일정한 경향성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이러한 과제는 후 고에서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文選』

『通典』

국사편찬위원회 고려시대 사료 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KOREA>)

2. 연구논저

末松保和, 1956, 「高麗兵馬使考」, 『東洋學報』 39-1; 1965, 『靑丘史草』 1, 笠井出版社

金南奎, 1969, 「高麗 兩界兵馬使에 대하여」, 『李弘植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신구문화사; 1989, 『高麗兩界地方史研究』, 새문社

邊太燮, 1969, 「高麗都堂考」, 『歷史教育』 11·12 합집; 1971,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邊太燮, 1971, 「高麗兩界의 支配組織」, 『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潮閣

金甲童, 1994, 「高麗時代의 都兵馬使」, 『歷史學報』 141

清木場東, 1997, 『帝賜の構造』, 中國書店

朴龍雲, 2000, 『고려시대 中書門下省宰臣 연구』, 一志社

朴龍雲, 2000, 『高麗時代 尙書省 研究』, 景仁文化社

朴龍雲, 2001, 『高麗時代 中樞院 研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院

박용운, 2008, 「고려시기 兵馬使와 都兵馬使 機構에 대한 몇 가지 문제」, 『韓國史研究』 141

박우현, 2012, 「高麗時代 戰功者 禮遇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려 전기 軍功者 포상의 절차와 내용

李美智, 2012, 「고려시기 對거란 2차 전쟁 유공자와 그들에 대한 추가 포상」
『韓國史研究』 157

김신해, 2015, 「고려 예종대 ‘恩賜’ 정책의 유형과 정치적 성격」 『韓國史學報』
58

Abstract

Compensation Scheme for Patriots and War Veterans in the 10th~11th century Koryo Dynasty

Miji LEE

This paper tried to look into the basic factors of the compensation scheme for patriots and war veterans in the earlier half of the Koryo dynasty through the individual examples of honoring and rewarding.

The dynasty did not need yet to set up a system on compensation for war veterans in the very early stage of its establishment; so that rewards were given as occasion arises. It was not until the earlier half of the 11th century when the Koryo dynasty had gone through wars with the Khitan Liao dynasty that the primary rewarding system had been prepared.

The Ministry of Military Affairs (兵部), in the early stage of the system, conducted the primary process of reward. Then, at some point, the function was somehow transferred to the Military Commissioners of the Border Region (兩界兵馬使). The Military Commissioners took primary charge in recommending the candidates for reward; they screened the candidates based upon their merits and also reviewed the positive candidates' achievements. After the Chief Military Commission (都兵馬使) supervised the Military Commissioners reports the reward was finalized by the king's permission.

It is not easy to say how long it would have taken until the rewarding

ceremony took place after the king's final decision. The fastest case took only eighteen days from screening to ceremony; however, in some cases, it took more than two or three years to acknowledge and reward the soldiers' merits.

The rewarding ceremony generally took place in the royal court. It must have been a very special honor for the object of reward since he was granted an audience with the king; also, I think the ceremony being held in the presence of the king contributed in reinforcing the loyalty of the object of reward.

Additional prize for the military merits falls into two categories: an in-kind - such as grain, land, fabric, silver (rarely gold) goods - payment, and an appointment to an official title.

This paper assumes that the fundamental compensation system for patriots and war veterans of the Koryo dynasty, as investigated as above, was organized no later than the king Munjong's reign in the 11th century.

Keywords : Koryo dynasty, reward system, military merit,
compensation scheme, patriot, war veteran

